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태모의원 외 5명
제출연월일	2023. 6. 8.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86호
--------------	------

발의연월일 : 2023. 06. 08.

대표발의자 : 이태모

공동발의자 : 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윤금숙

1. 제안이유

징계기준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일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의 규정을 구체화·세분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징계기준의 구체화·세분화 추진 (별표)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43조, 제46조, 제98조 ~ 제101조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6. 8. ~ 6. 12.(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이태모의원 외 5명

【별표】

〈 징 계 기 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병과가능)			
		경	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상당(금고이상)	○	○	○	○
	- 면허정지 상당	○	○	○	
	○ 음주 등 추태 행위	○	○		
	○ 범법행위				
	- 각종 비위행위 (금고 미만 확정판결)	○	○	○	
	○ 성폭력, 성희롱	○	○	○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	○	
	○ 허위사실 유포	○	○		
	○ 기타 품위손상	○			
2. 청렴의무위반	○ (고의적) 탈세 행위	○	○	○	○
	○ 탈세 행위	○	○	○	
	○ 금품수수				
	- 직무관련성 有	○	○	○	○
	- 직무관련성 無	○	○		
	○ 인사청탁, 이권개입 금지 위반	○	○	○	
○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부정수수	○	○			
3. 겸직금지위반	○ 겸직신고 불성실 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 겸직 미신고, 허위신고	○	○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위반)	○	○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병과가능)			
		경	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 거래금지 위반	○	○	○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 받은자)	○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	○	○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	○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	○	○	
5.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무단 불참하거나, 의장(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	○	
	○ 회의장의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	○	○	
	○ 폭력행사, 타인 발언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에 등단하는 행위	○	○	○	
	○ 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	○	○	
	○ 제척·회피 의무 위반	○	○		
6. 비밀준수 의무 위반	○ 비공개회의 내용 및 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 및 전파하는 행위	○	○	○	
	○ 내부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	○	
	○ 정당한 이유 없는 비밀사항 유출	○	○		
7. 그밖의 위반 사항	○ 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	○	
	○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	○	○		
	○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	

※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개정 2019.4.30.)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성명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p>「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의회의원 (인)</p> <p>논산시의회의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관련)(신설2019.4.30.)

논산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p> <p>(신설 2019.4.30.) [별표] 징계기준 (제9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비위의 유형</th> <th style="width: 33%;">비위의 정도</th> <th style="width: 34%;">적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 결직신고 위반</td> <td>○ 결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된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td> <td>경고</td> </tr> <tr> <td>○ 결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td> <td>경고, 공개사과</td> </tr> <tr> <td>○ 결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93조제2항 위반)</td> <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 </tr> <tr> <td rowspan="5">2. 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td> <td>○ 영리거래금지 위반</td> <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 </tr> <tr> <td>○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된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td> <td>경고</td> </tr> <tr> <td>○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td> <td>경고, 공개사과</td> </tr> <tr> <td>○ 계약체결 제한 위반</td> <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 </tr> <tr> <td>○ 관리인 결직 사임권고 불이행</td> <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 </tr> </tbody> </table>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결직신고 위반	○ 결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된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결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결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93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된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결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 징 계 기 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비위의 유형</th> <th rowspan="2">비위의 정도</th> <th colspan="5">적용기준(병과가능)</th> </tr> <tr> <th>경고</th> <th>공개사과</th> <th>출석정지</th> <th>제명</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1. 품위유지의무 위반</td> <td>○ 음주운전 - 면허취소 상당(급고이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면허정지 상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음주 등 주대 행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불법행위 - 각종 비위행위 (급고 미만 확정판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성폭력, 성희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허위사실 유포 ○ 기타 품위손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2. 청렴의무위반</td> <td>○ (고의적) 탈세 행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탈세 행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금품수수 - 직무관련성 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직무관련성 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인사장착, 이권개입 금지 위반 ○ 외부 강 의 등의 사례금 부정수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3. 겸직금지위반</td> <td>○ 결직신고 불성실 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겸직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위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비위의 유형</th> <th rowspan="2">비위의 정도</th> <th colspan="5">적용기준(병과가능)</th> </tr> <tr> <th>경고</th> <th>공개사과</th> <th>출석정지</th> <th>제명</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td> <td>○ 영리 거래금지 위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 받은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계약체결 제한 위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5. 회의질서유지의무 위반</td> <td>○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무단 불참하거나, 의장(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회의장의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폭력행사, 타인 발언 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에 등단하는 행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제적·회피 의무 위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6. 비밀준수의무 위반</td> <td>○ 비공개회의 내용 및 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 및 전파하는 행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내부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정당한 이유 없는 비밀사항 유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7. 그밖의 위반 사항</td> <td>○ 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음.</p>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병과가능)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명	1.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상당(급고이상)	○	○	○	○	○	- 면허정지 상당	○	○	○			○ 음주 등 주대 행위	○	○				○ 불법행위 - 각종 비위행위 (급고 미만 확정판결)	○	○	○			○ 성폭력, 성희롱	○	○	○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	○			○ 허위사실 유포 ○ 기타 품위손상	○	○				2. 청렴의무위반	○ (고의적) 탈세 행위	○	○	○	○		○ 탈세 행위	○	○	○			○ 금품수수 - 직무관련성 有	○	○	○	○	○	- 직무관련성 無	○	○				○ 인사장착, 이권개입 금지 위반 ○ 외부 강 의 등의 사례금 부정수수	○	○	○			3. 겸직금지위반	○ 결직신고 불성실 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 겸직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위반)	○	○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병과가능)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명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 거래금지 위반	○	○	○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 받은자)	○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	○	○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	○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	○	○			5. 회의질서유지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무단 불참하거나, 의장(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	○			○ 회의장의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	○	○			○ 폭력행사, 타인 발언 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에 등단하는 행위	○	○	○			○ 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	○	○			○ 제적·회피 의무 위반	○	○				6. 비밀준수의무 위반	○ 비공개회의 내용 및 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 및 전파하는 행위	○	○	○			○ 내부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	○			○ 정당한 이유 없는 비밀사항 유출	○	○				7. 그밖의 위반 사항	○ 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	○			○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결직신고 위반	○ 결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된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결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결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93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된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결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병과가능)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명																																																																																																																																																																																																																													
1.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상당(급고이상)	○	○	○	○	○																																																																																																																																																																																																																													
	- 면허정지 상당	○	○	○																																																																																																																																																																																																																															
	○ 음주 등 주대 행위	○	○																																																																																																																																																																																																																																
	○ 불법행위 - 각종 비위행위 (급고 미만 확정판결)	○	○	○																																																																																																																																																																																																																															
	○ 성폭력, 성희롱	○	○	○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	○																																																																																																																																																																																																																															
	○ 허위사실 유포 ○ 기타 품위손상	○	○																																																																																																																																																																																																																																
2. 청렴의무위반	○ (고의적) 탈세 행위	○	○	○	○																																																																																																																																																																																																																														
	○ 탈세 행위	○	○	○																																																																																																																																																																																																																															
	○ 금품수수 - 직무관련성 有	○	○	○	○	○																																																																																																																																																																																																																													
	- 직무관련성 無	○	○																																																																																																																																																																																																																																
	○ 인사장착, 이권개입 금지 위반 ○ 외부 강 의 등의 사례금 부정수수	○	○	○																																																																																																																																																																																																																															
3. 겸직금지위반	○ 결직신고 불성실 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 겸직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위반)	○	○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병과가능)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명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 거래금지 위반	○	○	○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 받은자)	○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	○	○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	○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	○	○																																																																																																																																																																																																																															
5. 회의질서유지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무단 불참하거나, 의장(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	○																																																																																																																																																																																																																															
	○ 회의장의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	○	○																																																																																																																																																																																																																															
	○ 폭력행사, 타인 발언 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에 등단하는 행위	○	○	○																																																																																																																																																																																																																															
	○ 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	○	○																																																																																																																																																																																																																															
	○ 제적·회피 의무 위반	○	○																																																																																																																																																																																																																																
6. 비밀준수의무 위반	○ 비공개회의 내용 및 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 및 전파하는 행위	○	○	○																																																																																																																																																																																																																															
	○ 내부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	○																																																																																																																																																																																																																															
	○ 정당한 이유 없는 비밀사항 유출	○	○																																																																																																																																																																																																																																
7. 그밖의 위반 사항	○ 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	○																																																																																																																																																																																																																															
	○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개정 2019.4.30.)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결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지역구	생년월일
성명	한자			
결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p>「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의회의원 (인)</p> <p>논산시의회의장 귀하</p>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개정 2019.4.30.)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결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지역구	생년월일
성명	한자			
결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p>「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의회의원 (인)</p> <p>논산시의회의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관련)(신설2019.4.30.)

논산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지역구	생년월일
성명	한자			
<p>「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의회의원 (인)</p> <p>논산시의회의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관련)(신설2019.4.30.)

논산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지역구	생년월일
성명	한자			
<p>「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의회의원 (인)</p> <p>논산시의회의장 귀하</p>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